

'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시료분석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GAP 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확대를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까지

4. 추정금액: 56,1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총 56,120천원(국비 28,060천원, 시도비 8,418천원, 시군비 19,642천원)

유형	품목	대상 지역	농가 (호)	필지 수	분석건수			사업비(원)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230	230	230	115	115	56,120,000	28,060,000	8,418,000	19,642,000
2유형	원예작물	풍기읍리	14	14	14	7	7	3,416,000	1,708,000	512,400	1,195,600
2유형	원예작물	풍기읍리	14	14	14	7	7	3,416,000	1,708,000	512,400	1,195,600
2유형	원예작물	풍기읍리	24	24	24	12	12	5,856,000	2,928,000	878,400	2,049,600
2유형	원예작물	풍기읍리	10	10	10	5	5	2,440,000	1,220,000	366,000	854,000
2유형	원예작물	풍기읍리	8	8	8	4	4	1,952,000	976,000	292,800	683,200
2유형	원예작물	풍기읍리	2	2	2	1	1	488,000	244,000	73,200	170,800
2유형	원예작물	봉현면리	25	25	26	13	13	6,344,000	3,172,000	951,600	2,220,400
2유형	원예작물	봉현면리	20	20	20	10	10	4,880,000	2,440,000	732,000	1,708,000
2유형	원예작물	봉현면리	22	22	22	11	11	5,368,000	2,684,000	805,200	1,878,800
2유형	원예작물	봉현면리	14	14	14	7	7	3,416,000	1,708,000	512,400	1,195,600
2유형	원예작물	봉현면리	28	28	28	14	14	6,832,000	3,416,000	1,024,800	2,391,200
2유형	원예작물	봉현면리	26	26	26	13	13	6,344,000	3,172,000	951,600	2,220,400
2유형	원예작물	봉현면리	23	23	22	11	11	5,368,000	2,684,000	805,200	1,878,800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2026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발주자가 제공하는 과업대상 토지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지역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에 따라 분석
- 시료별 분석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26년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토양, 용수 기준 단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① 토양·용수 분석

- 과업대상 토양·용수 시료 채취
 - 토양·용수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시 요령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2호)’의 규정을 준용
 - ※ 용수 분석의 경우, 복수의 과업대상지가 동일 용수원으로 중복되거나, 작물의 특성상 용수 분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량은 부적합지 추가 조사 또는 새로운 과업대상지 발굴로 대체할 수 있음
- 채취된 시료의 토양·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 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일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용수 시료 분석성적서,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6.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 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

감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군·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 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부적합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 기타, 대체 사업량 발굴 필요성이 인정될 때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분	성과품 내역	수량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지적도 포함)	2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